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17가합534325(본소), 2017가합55992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계약금액반환 청구]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윤성휘, 이규석

피고(반소원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이상섭, 김방호

변론 종결2021. 9. 8.

판결 선고2021. 10.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65,981,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취지 및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6. 6. 15.자 「다수공급자계약 부당이익금 환수」공문, 2016. 6. 16.자 「다수공급자계약 부당이익금 환수내역 정정」 공문 및 이에 따른 납입고지서에 기한 금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 소 청 구 취 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65,981,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들의 관계 및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1. 11. 3.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원고 A'라 한다)의 사업부문 중 식품, 화학 및 사료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새롭게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A는 분할 후 존속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11. 1. 10.부터 2015. 3. 24.까지 피고 산하 조달청장(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20. 9. 29. 대통령령 제310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절차를 통하여 토목용 보강재(물품분류번호 C)에 대하여 인도조건을 납품장소 하차도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라 하고, 아래 각 계약은 '제1물품구매계약'과 같이 연번으로 특정한다).

1	2011.1.10.~2011.11.30.	2011. 1. 10.2011. 11. 24.1) 원고 A가 2011. 1. 10. 체결한 기존계약에 대하여, 이후 인적분할 등으로 사업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 B가 피고와 사이에 2011. 11. 24. 위 기존계약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이에 따라 수정계약 전 A의 계약번호는 D이고, 수정계약 후 원고 B의 계약번호는 E이다)	AB	2,360,000,000	물품규격 6가지,총 수량 250,000개
2	2012.1.11.~2012.11.30.	2012. 1. 11.	B	2,093,000,000	물품규격 6가지,총 수량 250,000개
3	2012.12.14.~2013.11.30.	2012. 12. 14.2013. 6. 3.2) 2013. 6. 3. 상세물품(규격)의 종류와 수량을 추가함에 따라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수정계약 체결	B	1,882,000,0002,101,200,000	물품규격 5가지,총 수량 250,000개물품규격 11가지,총 수량 275,000개
4	2014.1.24.~2014.12.31.	2014. 1. 24.	B	4,514,100,000	물품규격 11가지,총 수량 550,000개
5	2015.2.12.~2015.12.31.	2015. 2. 12.2015. 3. 24.3) 2015. 3. 24. 일부 상세물품의 단가를 감액함에 따라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수정계약 체결	B	3,700,300,0003,531,600,000	물품규격 11가지,총 수량 520,000개

3)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대상인 토목용 보강재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물품의 계약단가는 아래와 같다.

TRIGRID 4T	6,000	5,000	5,000	4,850	4,850
TRIGRID 6T	7,000	6,500	5,800	5,630	5,630
TRIGRID 8T	7,800	7,500	7,000	6,790	6,790
TRIGRID 10T	11,200	10,000	9,000	8,730	8,730
TRIGRID 15T	13,000	11,700	11,000	10,670	10,670

4)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는 각 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1. 7. 29. 조달청공고 제2011-40호로 개정되어 2011. 7. 29. 시행된 것, 2012. 8. 24. 조달청공고 제2012-56호로 개정되어 2012. 8. 25. 시행된 것, 2013. 9. 23. 조달청공고 제2013-48호로 개정되어 2013. 10. 1. 시행된 것, 2014. 3. 24. 조달청공고 제2014-24호로 개정된 것, 위 각 특수조건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이하 마지막 특수조건을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적용)

이 사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사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3(납품요구)

① 본 계약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조달청 확인)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며,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수요기관에게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의 시장공급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 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4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달가격이 우대가격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서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로 구매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대금을 환수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원고 B는 각 수요기관에게 별지 환수내역 기재와 같이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들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 및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각

가격자료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11. 10. 경찰로부터 토목용 보강재의 고가 구매 여부와 관련한 수사협조를 요구받자, 2015. 12. 9.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토목용 보강재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체결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삭제하고 단가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가격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3)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 B의 직원으로서 피고와 사이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담당하는 산업자재판매 2팀에서 근무하던 F, G, H는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허위의 가격자료를 다수공급자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및 '위와 같이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과 사이에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로 F, H는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G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8.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391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2020노366 판결4), 이하 이를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보 등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부당한 가격자료 제출에 따라 고가 계약체결됨으로 인한 부당이익금 4,990,696,586원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가, 2016. 6. 21. 원고에게 위 환수금액과 환수내역을 정정하여 부당이익금 4,965,981,954원[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구매단가와 계약 당시 제출된 가격자료의 정상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품목별 시중거래가격(가중평균가격 또는 최저가격)과의 차액에 대금지급으로 거래종결된 납품량을 곱한 금액]을 환수한다는 통보(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환수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1)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장이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되,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구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은 직접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수요물자에 대해 납품요구를 한다. 납품업체가 납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면 조달청은 납품대금을 대지급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한다.

2)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은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를 거치고 구매공고 당시부터 구매대상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평가와 가격협상절차 없이 한 명의 계약상대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 조달물자 구매계약과 차이가 있고,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단계까지는 조달청장이 수요물자의 단가만을 정하고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는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하는 소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방식을 택하고 있다[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3. 2. 21. 조달청훈령 제1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이 사건 특수조건 제6조의3].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의 지급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대지급)이 원칙이다(구 조달사업법 제5조의4 제1항).

3)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담당과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2개월간 민간업체에 판매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를 제출받아 마련한 협상기준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업무처리규정 제13조, 제15조).

[인정 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13,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피고에게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별개로 직접 가격조사를 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허위서류 제출과 피고의 계약단가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품한 가격과 비슷한 시중거래가격 수준의 단가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았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의 환수금액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체결되었을 적정한 계약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토목용 보강재 납품시장의 구조 및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과 같은 공공부문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증과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계용역비, 영업비용, 운반비용 등 추가적인 계약부대비용이 발생되므로, 개별적인 민간거래보다 계약부대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위 공공부문 납품계약에 설정된 단가가 더 고액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원고 B가 I (주),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등과 거래한 일반 시장공급가격 내지 공장도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일반 시장공급가격을 기초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각 규격별 환수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환수통보를 하였는데, 피고가 적용한 시장공급가격이 위 적정한 계약단가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

3)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고가 구매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가 아닌 수요기관이라고 할 것인데, 이미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피고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위 환수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없다.

4) 또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수통보에 따른 환수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격조사를 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환수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고가 구매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가 구매 금액 상당액을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2) 원고 B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2015. 12.경 확보한 정상적으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로 확인되는 거래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을 기초로 단가를 산정하여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위 가중평균한 시장공급가격이 적정한 계약단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에게 위 가중평균한 시장공급가격과 계약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인 환수금액 4,965,981,954원(별지 환수내역 중 '환수금액'란 말미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환수금 지급의무(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국가가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 등을 사용하거나 그로 인하여 국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켜 계약금액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때에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6885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등 참조).

2) 을 제5, 6, 10, 11, 16, 18,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토목용 보강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참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적격자로 선정된 사실과 함께 가격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I, J, L, M 등에 공급한 일반 시장공급단가보다 2배에서 4배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 B는 이를 진실로 믿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환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원고들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은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토목용 보강재 단가를 결정하면서 실제 판매단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일반 시장단가보다 높게 책정된 단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달공무원의 처분행위는 원고 B의 허위 가격자료 제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상대자와 가격협상을 거쳐 최종단가를 정하게 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는 협상기준가격의 결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격자료 제출 시에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가격자료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날인하는데, 이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업무처리규정에서 가격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나라장터 거래정지,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사후적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④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이 제출받은 가격자료 등의 진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시행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재량일 뿐이고, 계약상대자가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에게 계약상대자의 거래처에 대해서까지 그 가격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할 강제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실무상 개별 거래업체를 상대로 일반 시장단가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을 즈음하여 원고 B뿐만 아니라 N, O, P, M, Q, R, S 등 다수의

토목용 보강재 판매업체들이 수년간 원고 B와 비슷한 방법으로 단가를 부풀린 가격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여 시중보다 높은 단가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토목용 보강재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의 허위 가격자료를 다수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상의 단가가 부당하게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수요기관일 뿐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수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환수금 채권의 법적 성질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상 원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임은 앞서 인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위 각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각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은 피고가 환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하고, 수요기관은 위 각 계약에서 확정된 가격으로 물품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뿐이며, 최종적으로 수요기관이 납품대금을 부담한다는 사정은 피고와 수요기관 사이의 내부적 정산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환수금액의 범위(손해액의 범위)

1) 원고 B의 환수금액 산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목용 보강재 시장의 특성상 국가계약을 체결할 때 민간거래보다 계약부대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단가가 고액으로 책정되어야 하므로, 원고 B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수금액 내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 국가를 상대로 한 토목용 보강재 납품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시장단가보다 고가의 거래단가를 책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B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에 있어 일반 시장단가보다 수 배가량 높은 단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국가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각 물품구매계약상의 계약단가가 일반

시장단가보다 약 2~4배 정도 높게 결정되었는데, 원고 B가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수요기관에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과 시중에 판매한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으며, 원고들 역시 위 각 토목용 보강재는 동일한 품질임을 인정하고 있다.

② 다수공급자계약은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은 원고 B로부터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으로, 원고 B에게 어떠한 설계, 용역 업무를 부과하거나 인증을 받을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특수조건 제11항에 의하면, 원고 B는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조달청 계약단가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우대가격 유지의무), 원고 B가 사인과의 계약과 달리 조달청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이 '적정 계약단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위 특수조건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인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이나 설정된 규격별 단가에 원고 B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설계, 용역비용 내지 각종 계약부대비용이 포함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 B는 설계, 용역비용을 비롯하여 여러 계약부대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당시 지출되었다는 위 계약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 B 입장에서는 해당 토목용 보강재를 시중에 공급하는 수요기관에 납품하든 토목용 보강재를 판매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시중 판매단가와 달리 유독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계약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단가를 고액으로 정한다는 것은 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사전에 계약상대방인 피고에게 고지하여 이에 피고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단가 등 가격 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가격결정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 B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문언에 따라 규격화된 토목용 보강재 납품 의무만 있을 뿐 어떠한 용역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갑 제3 내지 7호증, 물품 인도조건이 '납품장소 하차도'로 정해져 있고 설계용역 수행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설계용역 등과 같은 제반비용이 계약단가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

덧붙여 나라장터에 물품이 등록된 후에야 각 수요기관이 직접 물품을 선택하고 납품을 받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 및 다수의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수요기관 대신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 B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받을 수요기관'이 특정될 수 없고, 그 결과 필요한 용역 내지 인증의 내용 역시 특정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가 설계용역을 수행하거나 인증 등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제반비용을 임의로 미리 다수공급자계약의 단가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반비용까지 포함한 단가로 체결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한편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감액 또는 환수청구권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그러한 손해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물품에 대한 가격자료는 통상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나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금액을 감액 내지 환수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그 산정방식이나 산정근거가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면 적정한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산정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계약상대자인 원고 B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보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 B로서는 실제의 시중단가가 피고가 주장한 금액들과 판이하다거나 피고의 환수금액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부분이 주장·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2)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와 앞서 본 시장공급가격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 B가 당시 다른 거래처들에게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한 각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시장공급가격이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임을 전제로, 위 시장공급가격과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의 차액이 피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6, 7,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정한 시장공급가격은 이 사건 각 물품계약에서 책정되었어야 할 정당한 계약단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액은 원고 B가 납품한 품목별 계약단가와 피고가 이 사건 환수통보와 같이 산정한 시장공급가격의 차액에 원고 B가 납품을 종결한 물량(별지 환수내역 중 '수량'란에 기재된 물량)을 곱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원고 B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다른 거래처에 토목용 철강재를 납품한 정상적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수 확보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 B로부터 납품받은 토목용 보강재의 규격별로 부여된 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약 60여개의 거래 납품단가를 기초로 각 규격별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환수통보는 위 규격별 가중평균가격과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규격별 단가와 차액에 납품이 종결된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있다. 가령 TRIGRID 6T(식별번호 T)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등으로 확인되는 원고 B가 다른 시중 거래처들에 납품한 63개의 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여 2011년경의 시장공급가격을 1,905.885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피고의 이와 같은 시장공급가격 산정 방법은 원고 B가 실제 여러 민간업체들과 거래한 내역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물론 같은 연도에 납품된 토목용 보강재라 하더라도 업체별로 납품단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업체의 경우 공급단가를 일반 시중단가보다 낮게 산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시장공급가격은 적어도 50여개 이상의 정상적인 시중거래를 기준으로 규격별 가중평균가격을 구한 것으로 위와 같이 단가가 거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손해액의 기초가 된 규격별 단가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③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국가 등 공공부문계약에서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과 시중에서 납품한 토목용 보강재의 품질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원고 B가 민간업체 등 거래처에 토목용 보강재를 공급하면서 그 공급단가를 일반 시중단가와 현저히 다르게 산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음을 고려하면, 위 공급단가와 일반 시중단가의 차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약상대자인 원고 B 역시 피고의 산정방식 등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 여부 원고 B는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환수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가격조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게 되는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B가 제출한 가격자료에 관하여 '가격자료가 불명확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이 사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가격조사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 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계약 체결 당시 채권자가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 채무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에 터 잡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 B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의 계약단가가 원고 B가 제출하는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허위의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원고 B는 민간거래에서 실제로 공급한 가격보다 높은 단가를 기재한 가격 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거래명세표, 수량 및 단가를 공란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가격자료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이라는 문구 등을 날인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그 결과 시장공급가격보다 2~4배 고가로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 B는 이 사건 환수통보로 인한 환수금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계약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결과 그 착오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원고 B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원고 B는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수요기관에 토목용 보강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때(납품종료일)로부터 진행되며, 위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피고가 원고 B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7. 9. 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채권, 즉 납품종결일이 2012. 9. 1. 이전인 납품건에 관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의 환수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품종결일이 2012. 9. 1. 이전인 납품건에 관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2. 원고 B에게 환수금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위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위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인 2016. 8. 12. 국고금 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를 하여, 위 납입고지가 2016. 8. 16. 원고 B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원고 B의 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5).

라. 소결

그렇다면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제13조 제1항에 따라 4,965,981,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환수 통보에 따른 납입고지 다음날인 2016. 9.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의 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B'였으나, 2011. 11. 1. 일부 사업부문에 관하여 인적분할을 실시하여 원고 B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2011. 11. 24. 원고 B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1. 1. 10.자 물품구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B가 아닌 원고 A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2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분할되기 전 '주식회사 B' 명의로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제1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D)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1. 11. 1. 인적분할로 인하여 기존 원고 A의 위 제1 물품구매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원고 B의 요청에 따라 2011. 11. 24. 계약당사자를 원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계약번호 E)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2011. 1. 10.자 물품구매계약이 포함된 제1 물품구매계약 역시 변경계약을 거쳐 계약당사자는 원고 A가 아닌 원고 B로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B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수 통보와 이에 따른 납입고지로 인한 금전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환수 통보 등에 따른 환수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서 '4,965,981,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9.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 원고 B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전혼자

판사김진호

별지

1) 원고 A가 2011. 1. 10. 체결한 기존계약에 대하여, 이후 인적분할 등으로 사업부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원고 B가 피고와 사이에 2011. 11. 24. 위 기존계약에 대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이에 따라 수정계약 전 A의 계약번호는 D이고, 수정계약 후 원고 B의 계약번호는 E이다)

2) 2013. 6. 3. 상세물품(규격)의 종류와 수량을 추가함에 따라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수정계약 체결

3) 2015. 3. 24. 일부 상세물품의 단가를 감액함에 따라 총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수정계약 체결

4) 다만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F,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중 '2009. 11. 30.자 물품구매계약과 관련된 납품 부분에 대한 편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으나,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물품구매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5) 피고는 2016. 8. 16.부터 역산하여 5년이 지난 납품종결일이 2011. 8. 16. 이전인 납품건에 대한 환수금 채권에 한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피고 제출 2021. 7. 6.자 준비서면 6면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별도로 2011. 8. 16. 이전 납품건에 대한 환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고, 실제 해당 시기까지 납품이 종결된 내역이나 시효가 소멸된 환수금 채권의 금액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